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성주군수
2. 개정이유
 ○ 「주차장법」 등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·정비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 ○ 주차요금 경감 사항 추가(안 제5조제2항제3호)
 -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
 ○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(안 제15조의2)
 -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·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여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
4. 참고사항
 가. 관계법령:「주차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」 등
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없음.
 다. 입법예고: 의견없음(2016. 9. 21 ~ 10. 12)
 라.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.
 마. 성별영향평가분석: 해당사항 없음.
5. 검토의견
 ○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·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(기존,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)의 범위가 추가 확대되어(변경, 전기, 태양광, 연료전지, 천연가스, 클린디젤자동차 등) 본 차량 등에 대하여 주차요금 50% 경감사항 추가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.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